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029

발의연월일: 2024. 10. 30.

발 의 자:이인영・이학영・전용기

박상혁 • 이정문 • 김용만

이기헌 · 장철민 · 임광현

김동아 · 김성회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철광석, 원유, 펄프 등 원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인상되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자 현행법에 공급원가의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도입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노무비를 하도급대금 연동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수급사업자가 여전히 노무비의 변동분을 부담하여야 하여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서 노무비 변동 시에도 하도급대금이 연동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노무비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하도급대금이 조정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급원가의 변동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실질적으 로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법률 제 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7항 중 "가격이"를 "가격 또는 노무비가"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주요 원재료"를 "주요 원재료, 노무비"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권장할 수 있다"를 "권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연장·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제2조(정의) ① ~ ⑯ (생 략) | 제2조(정의) ① ~ ⑯ (현행과 같 | | |
| | 음) | | |
| ⑪ 이 법에서 "하도급대금 연 | ① | | |
| 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u>가격이</u> | <u>가격</u> | | |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0 | 또는 노무비가 | | |
| 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 | | | |
| 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 | | |
|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 | | | |
| 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 | | | |
| 한다. | | | |
|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 |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 | | |
| 존) ① (생 략) | 존) ① (현행과 같음) | | |
|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 ② | | |
| 호의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 | | |
|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 | | | |
|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 | | | |
| 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 | | | |
| 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 | | |
|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 | | |
| 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 | |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
| 3.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 | 3 | | |
| 적물등의 명칭, <u>주요 원재료,</u> | <u>주요</u> 원재료, | | |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

4. (생략)

③ ~ ② (생 략)

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개정 및 사용)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이라 한다)에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② ~ ⑧ (생 략)

| <u>노두미,</u> | |
|-------------------|--|
| | |
| | |
| | |
| | |
| 4. (현행과 같음) | |
| ③ ~ ⑫ (현행과 같음) | |
| 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 | |
| 정·개정 및 사용) ① | |
| | |
| | |
| | |
| | |
| | |
| | |
| 권고하여야 한다. | |
| ② ~ ⑧ (현행과 같음) | |